해커스공무원 국가직 9급 관세법개론 총평 (2021년 4월 17일)

관세법 임준희 선생님

1. 단원 별 출제 비중

이번 4월 17일(토)에 치러진 국가직 9급 관세법 개론의 단원별 출제비중은 아래와 같습니다.

지금까지의 모든 시험에서 가장 출제 비중이 높았던 2장(5문제), 9장(4문제) 2개의 단원에서 거의 절반에 가까운 출제 비중을 보였고, 1장, 8장에서 각각 2문제, 통합문제가 2문제 출제된 것으로 확인됩니다.

출제 단원	출제 문항 수
1장	2문항
2장	5문항
4장	1문항
5장	1문항
6장	1문항
7장	1문항
8장	2문항
9장	4문항
11장	1문항
통합문제	2문항

※ 3, 10, 12, 13장 미출제

2. 관세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의 출제 비중

(1) 관세법 시행령의 내용을 묻는 문항은 아래와 같이 3문항이 출제되었습니다.

- **8번 [관세법 시행령 제45조의2(관세체납정리위원회 위원의 제척·회피)]**
- **16번 [관세법 시행령 제1조의5(월별납부) 제4항] 등**
- **19번 [관세법 시행령 제245조(반입명령)]**

(2) 관세법 시행규칙의 내용을 묻는 문항은 아래와 같이 1문항이 출제되었습니다.

- **5번 [관세법 시행규칙 제62조의3(승객예약자료 제출시한)]**

3. 해커스 관세법 강의 적중 내용

(1) 저희가 관세법 강의시간에 다루었던 문제가 상당 부분 유사하게 출제되었습니다.

① 2021년 4월 국가직 9급 관세법개론 11번 문제 → **유사문제 - 관세법 실전동형 모의고사 과정 제2회 문 15번**

② 2021년 4월 국가직 9급 관세법개론 13번 문제 → **유사문제 - 관세법 실전동형모의고사 제1회 문12번**

③ 2021년 4월 국가직 9급 관세법개론 20번 문제 → **유사문제 - 관세법 실전동형 모의고사 제1회 문14번**

(2) 그 밖에 기본이론, 심화이론, 문제풀이, 실전동형모의고사 과정 등 관세법 강의마다 강조하였던 내용이 아래와 같이 출제되었습니다.

① 12번 문제 : 관세법 제175조(운영인의 결격사유) 조문의 중요성 강조!

② 17번 문제 : 관세법 제92조(정부용품 등의 면세) 대상과 관세법 제95조(환경오염 방지물품의 감면) 대상 구분하는 부분 강조!

해커스공무원 국가직 9급 관세법개론 해설 (2021. 4. 17)

관세법 임준희 선생님

1. 정답 : ③

수입화물선취보증장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업서류 (송품장, 선하증권, 항공화물운송장)

[관세법 제19조(납세의무자) 제1항]
[관세법 시행령 제5조(납세의무자)]

[오답]

① [관세법 제16조(과세물건 확정의 시기) 제10호]

② [관세법 제17조(적용 법령) 제1호]

④ [관세법 제18조(과세환율)]

2. 정답 : ②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라도 다른 공무원을 참여시켜야 한다.
→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른 공무원을 참여시켜야 한다

[관세법 제43조(관세의 현장 수납) 제2항]

[오답]

① [관세법 제43조(관세의 현장 수납) 제1항]

③ [관세법 제43조(관세의 현장 수납) 제3항]

④ [관세법 제43조(관세의 현장 수납) 제4항]

3. 정답 : ③

[관세법 제2조(정의) 제4호]

[오답]

① 반송이란 국내에 도착한 물품이 수입통관절차를 거치고 다시 외국으로 반출되는 것을 말한다.
→ 반송이란 국내에 도착한 외국물품이 수입통관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다시 외국으로 반출되는 것을 말한다.

[관세법 제2조(정의) 제3호]

② 수출이란 물품을 국외로 반출·반송하는 것을 말한다.
→ 수출이란 내국물품을 외국으로 반출하는 것을 말한다.

[관세법 제2조(정의) 제2호]

④ 국제무역기란 무역을 위하여 외국과 외국 간을 운항하는 항공기를 말한다.
→ 국제무역기란 무역을 위하여 우리나라와 외국 간을 운항하는 항공기를 말한다.

[관세법 제2조(정의) 제7호]

4. 정답 : ②

'제215조(보세운송 보고)에 따른 보세운송 보고의 생략' 은 해당되지 않음.

[오답]

[관세법 제220조(간이 보세운송)]

세관장은 보세운송을 하려는 물품의 성질과 형태, 보세운송업자의 신용도 등을 고려하여 관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세운송업자나 물품을 지정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1. 제213조 제2항에 따른 신고절차의 간소화

2. 제213조 제3항에 따른 검사의 생략

3. 제218조에 따른 담보 제공의 면제

5. 정답 : ③

출항 30분 전까지 → 출항 후 3시간 이내

[관세법 시행규칙 제62조의3(승객예약자료 제출시한)]

법 제137조의2 제1항에 따른 승객예약자료의 제출시한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의한다.

1. **출항하는 선박** 또는 항공기의 경우: **출항 후 3시간 이내**

2. 입항하는 선박 또는 항공기의 경우: 입항 1시간 전까지. 다만, 운항예정시간이 3시간 이내인 경우에는 입항 30분 전까지 할 수 있다.

[오답]

① [관세법 제134조(국제항 등에의 출입) 제1항]

② [관세법제136조(출항절차) 제1항]

④ [관세법 제158조의2(승객예약자료의 열람 등) 제4항]

6. 정답 : ④

취소하지 아니한다.
→ 취소하고, 유예에 관계되는 체납액을 한꺼번에 징수할 수 있다.

[관세법 제43조의2(압류·매각의 유예) 제5항]

⑤ 세관장은 압류 또는 매각의 유예를 받은 체납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압류 또는 매각의 유예를 취소하고, 유예에 관계되는 체납액을 한꺼번에 징수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세관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압류 또는 매각의 유예를 취소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체납액을 분납계획에 따라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2. 담보의 변경이나 그 밖에 담보 보전에 필요한 세관장의 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

3. 재산상황이나 그 밖의 사정의 변화로 유예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될 경우

[오답]

① [관세법 제43조의2(압류·매각의 유예) 제1항]

② [관세법 제43조의2(압류·매각의 유예) 제2항]

③ [관세법 제43조의2(압류·매각의 유예) 제5항]

7. 정답 : ①

10일 → 20일

[관세법 제123조(심사청구서의 보정) 제1항]

[오답]

② [관세법 제128조의2(불고불리·불이익변경 금지) 제2항]

③ [관세법 제129조의2(정보통신망을 이용한 불복청구) 제1항]

④ [관세법 제125조(심사청구 등이 집행에 미치는 효력) 제1항]

8. 정답 : ②

10년 → 5년

[관세법 시행령 제45조의2(관세체납정리위원회 위원의 제척·회피)]

[오답]

① [관세법 시행령 제43조(관세체납정리위원회 위원의 해임 등) 제7호]

③ [관세법 시행령 제45조(관세체납정리위원회의 회의) 제2항]

④ [관세법 시행령 제48조(의결사항의 통보)]

9. 정답 : ④

[관세법 제268조의2(전자문서 위조·변조죄 등) 제2항]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327조의2 제1항에 따른 지정을 받지 아니하고 국가관세종합정보망을 운영하거나 제327조의3 제1항을 위반하여 관세청장의 지정을 받지 아니하고 전자문서중계업무를 행한 자

[오답]

① [관세법 제277조(과태료) 제3항 제1호]

② [관세법 제277조(과태료) 제4항 제6호]

③ [관세법 제277조(과태료) 제4항 제1호]

10. 정답 : ④

[관세법 제318조(무자력 고발)]

관세청장이나 세관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경우에는 제311조 제1항에도 불구하고 즉시 고발하여야 한다.

1. 관세범인이 통고를 이행할 수 있는 자금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2. 관세범인의 주소 및 거소가 분명하지 아니하거나 그 밖의 사유로 통고를 하기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오답]

① [관세법 제1조(목적)]

③ [관세법 제3조(관세징수의 우선) 제2항]

④ [관세법 제26조(담보 등이 없는 경우의 관세징수) 제2항]

11. 정답 : ④

[관세법 제214조(보세운송의 신고인)]

제213조 제2항에 따른 신고 또는 승인신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의 명의로 하여야 한다.

1. 화주

2. 관세사등

3. 보세운송을 업(業)으로 하는 자(이하 "보세운송업자"라 한다)

[오답]

① [관세법 제213조(보세운송의 신고) 제4항]

② [관세법 제216조(보세운송통로) 제1항]

③ [관세법 제218조(보세운송의 담보)]

12. 정답 : ③

'이 법을 위반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는 운영인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나, '「관세법」을 위반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이 끝난 후 1년이 된 자'는 운영인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음.

[관세법 제175조(운영인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특허보세구역을 설치·운영할 수 없다. 다만, 제6호에 해당하는 자의 경우에는 같은 호 각 목의 사유가 발생한 해당 특허보세구역을 제외한 기존의 다른 특허를 받은 특허보세구역에 한정하여 설치·운영할 수 있다.

1. 미성년자

2. 피성년후견인과 피한정후견인

3.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4. 이 법을 위반하여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면제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이 법을 위반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오답]

① [관세법 제175조(운영인의 결격사유) 제3호]

② [관세법 제175조(운영인의 결격사유) 제4호]

「관세법」을 위반하여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난 후 1년 6개월이 된 자
→ 이 법을 위반하여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면제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에 해당함.

④ [관세법 제175조(운영인의 결격사유) 제1호]

13. 정답 : ④

세관장은 외국물품의 일시양륙에 따라 일시적으로 육지에 내려진 외국물품의 원산지가 우리나라로 허위 표시된 물품이더라도 유치할 수 없다.
→ 원산지를 우리나라로 허위 표시한 물품은 유치할 수 있다.

[관세법 제231조(환적물품 등에 대한 유치 등) 제1항]

세관장은 제141조에 따라 일시적으로 육지에 내려지거나 다른 운송수단으로 환적 또는 복합환적되는 외국물품 중 원산지를 우리나라로 허위 표시한 물품은 유치할 수 있다.

[오답]

① [관세법 제227조(의무 이행의 요구) 제1항]

② [관세법 제228조(통관표지) 제1항]

③ [관세법 제236조(통관물품 및 통관절차의 제한)]

14. 정답 : ③

경정청구에 따른 세관장의 통지에 이의가 있는 청구인은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2개월 이내에 관세청장에게 국세의 정상가격과 관세의 과세가격 간의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 세관장의 통지에 이의가 있는 청구인은 그 통지를 받은 날(2개월 내에 통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2개월이 지난 날)부터 30일 내에 기획재정부장관에게 국세의 정상가격과 관세의 과세가격 간의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관세법 제38조의4(수입물품의 과세가격 조정에 따른 경정) 제4항]

[오답]

① [관세법 제38조의2(보정) 제1항]

② [관세법 제38조의3(수정 및 경정) 제2항]

④ [관세법 제40조(징수금액의 최저한)]
[관세법 시행령 제37조(징수금액의 최저한) 제1항]

15. 정답 : ④

10일 → 1월

[관세법 시행령 제87조(긴급관세의 부과)

법 제6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긴급관세의 부과여부 및 그 내용은 무역위원회의 부과건의가 접수된 날부터 1월 이내에 결정하여야 한다.

[오답]

① [관세법 제319조(준용)]

관세범에 관하여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형사소송법」을 준용한다.

② [관세법 제320조(가산세의 세목)]

이 법에 따른 가산세는 관세의 세목으로 한다.

③ [관세법 제184조(장치기간이 지난 내국물품) 제1항]

16. 정답 : ①

[관세법 제8조(기간 및 기한의 계산) 제1항]

[오답]

②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민법」

[관세법 제8조(기간 및 기한의 계산) 제2항]

③ 관세를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하는 때
→ 관세를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납부하지 아니하는 경우

[관세법 시행령 제1조의5(월별납부) 제4항]

세관장은 납세의무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제2항에 따른 월별납부의 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이 경우 세관장은 월별납부의 대상으로 납세신고된 세액에 대해서는 15일 이내의 납부기한을 정하여 납부고지해야 한다.

1. 관세를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납부하지 아니하는 경우

④ 기획재정부장관 → 관세청장

「관세법」 제39조(부과고지)에 따른 납부고지를 생략할 수 있다. → 관세법 제39조에 따른 납부고지를 해야 한다.

[관세법 시행령 제2조(천재지변 등으로 인한 기한의 연장) 제2항~제4항]

② 세관장은 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기한을 연장하는 때에는 관세청장이 정하는 기준에 의하여야 한다.

③ 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기한을 연장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를 당해 납부기한이 종료되기 전에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납세의무자의 성명·주소 및 상호

2. 납부기한을 연장받고자 하는 세액 및 당해 물품의 신고일자·신고번호·품명·규격·수량 및 가격

3. 납부기한을 연장받고자 하는 사유 및 기간

④ 세관장은 법 제10조에 따라 납부기한을 연장한 때에는 법 제39조에 따른 납부고지를 해야 한다.

17. 정답 : ①

[관세법 제95조(환경오염방지물품 등에 대한 감면) 제1항 제3호]

[오답]

② [관세법 제92조(정부용품 등의 면세) 제4호]

③ [관세법 제92조(정부용품 등의 면세) 제7호]

④ [관세법 제92조(정부용품 등의 면세) 제8호]

18. 정답 : ②

1개월 → 30일
관세 → 과세가격

[관세법 제241조(수출·수입 또는 반송의 신고) 제4항]

[오답]

① [관세법 제241조(수출·수입 또는 반송의 신고) 제2항]

③ [관세법 제243조(신고의 요건) 제4항]

④ [관세법 제244조(입항전수입신고) 제1항]

19. 정답 : ③

[관세법 시행령 제245조(반입명령)]

①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은 수출입신고가 수리된 물품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238조 제1항에 따라 해당 물품을 보세구역으로 반입할 것을 명할 수 있다. 다만, 해당 물품이 수출입신고가 수리된 후 3개월이 지났거나 관련 법령에 따라 관계행정기관의 장의 시정조치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법 제227조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2. 법 제230조에 따른 원산지 표시가 적법하게 표시되지 아니하였거나 수출입신고 수리 당시와 다르게 표시되어 있는 경우

3. 법 제230조의2에 따른 품질등의 표시(표지의 부착을 포함한다)가 적법하게 표시되지 아니하였거나 수출입신고 수리 당시와 다르게 표시되어 있는 경우

4. 지식재산권을 침해한 경우

20. 정답 : ①

[관세법 제253조(수입신고전의 물품 반출) 제1항]

[오답]

② 5일 → 10일

[관세법 제253조(수입신고전의 물품 반출) 제4항]

③ 기획재정부령 → 대통령령

[관세법 제254조(전자상거래물품 등의 특별통관)

④ 10년 → 5년
기획재정부령 → 대통령령

[관세법 제255조의2(수출입 안전관리 우수 공인업체 등) 제8항]